

CEO Report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김세중·강성호·김유미

04호

2022.08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100세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시장은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근로 활동기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 대응과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 수요 대응으로 매칭할 수 있음. 보험산업은 사적연금시장이 세부 시장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 하면서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 공제로 환원하여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과 저축성보험 규제를 분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상품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됨.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부 사적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 인구 중 연령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1964년)는 대부분 은퇴연령을 넘어서고 있으며, 2차 베이비 붐 세대(1968~1974년) 또한 10여 년 내 은퇴연령에 도달함
 - 우리나라 연금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DB형 및 DC형)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원하는 개인들을 위한 일반연금 및 펀드투자 변액연금 등 민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은퇴 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크게 낮아 사람들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 규모는 축소되고 있고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이 부진한 원인은 다양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적되어 왔으며(김세중 2020), 이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수요 측 요인으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약화,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 변액연금 수수료 구조의 경직성 등이 있음
 - 공급 측 요인으로는 설계사 수수료 제약에 따른 판매유인 감소, IFRS17 시행에 따른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 K-ICS하에서 장수리스크 부담,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형 상품 유도 정책 등이 있음
- 사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시장 내 수요, 공급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세부 사적연금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난 경제환경 및 금융시장의 변화, 디지털화와 맞물린 소비자 인식 변화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임
- 본고는 사적연금시장을 세 개의 별도 시장으로 구분하고 경제환경 변화와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 시장별 현황과 보험산업의 사적연금시장 경쟁력을 진단하고, 사적연금 보장성 및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II

사적연금시장의 구분

-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기업형 IRP)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시장의 특성이 다르기에 각 시장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금상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직장 근로자만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그리고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이 전자에 속하고 퇴직연금(DC형, DB형, 기업형 IRP)이 후자에 속함
 - 한편,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적립기간 중에 세제혜택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할 수 있지만, 후자는 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음

〈표 II-1〉 사적연금시장의 구분

구분	개인형(개인)	기업형(근로자)
금융업종 간 경쟁 영역	세제적격 연금시장(연금저축, 개인형 IRP)	퇴직연금시장(DB형, DC형, 기업형 IRP)
보험회사 간 경쟁 영역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일반연금, 변액연금)	-

1. 세제적격 연금시장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하며, 세제혜택 니즈가 높은 개인이 가입하고 있음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은 최대 700만 원이며, 개인은 IRP 납입액만으로 또는 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한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에는 IRP 추가 납입으로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구성할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최대 700만 원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연금상품은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형 IRP에서는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연금저축에서는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특성상 자발적인 경로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신규가입 비중이 높을 수 있음
- 그러나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시장은 개인의 노후소득 재원을 적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65세 이후 고령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통상 10년의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금 개시를 전후한 시기의 소득 보장에 한정되고 있음
- 한편,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할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를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노후자산 적립 시 상품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적립기간의 수익률일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환급받는 세제적격 상품이 세제비적격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하고 있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개인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고자 가입하는 연금상품임
-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납입금에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적립 측면에서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변액연금은 이러한 단점을 펀드투자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자산 적립이 펀드투자자와 유사하므로 일반 펀드를 활용한 노후자산 마련과 차별화가 어려움
 - 다만,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임
-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타 업권에서 제공하지 않는 종신연금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통해 적립된 자산을 종신연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연금 본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
-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쟁력은 적립된 자산을 은퇴 이후에 유동화하는 수단(정기연금, 상속연금, 종신연금)이 다양하고 종신토록 소득흐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따라서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적립한 노후자산을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의 '일시납 종신연금'으로 흡수하는 역할이 중요함

3. 퇴직연금시장

-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고용주가 부담하느냐 근로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기업형 IRP가 있음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고용주(기업)에 귀속됨
 - 반면 DC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함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업형 IRP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운용은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함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큰 DB형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DC형 시장의 점유율은 은행이 보험을 비롯한 다른 금융업종을 앞서고 있음
 - 선진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겨가면서 근로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징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다는 점에 있음

4. 연금 가입 목적에 따른 시장 구분

- 한편, 사적연금시장을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근로 활동기 노후자산 적립이 목적인 경우와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이 목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 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세제적격 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를 노후자산으로 적립함으로써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후자산 적립 목적이 강하며,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경우 종신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수령 기간인 10년의 단기 수령을 선호함
 -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제적격 연금에 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대부분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10년의 단기 수령에 그침
 -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우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나, 노후자산 적립 목적은 세제유인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세제적격 연금이 선호될 수 있으며, 펀드나 부동산 등 연금시장 이외에도 대안이 존재함으로 노후자산 적립에 약점이 있을 수 있음
 - 세부 사적연금시장이 상이한 연금 가입 목적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적연금시장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표 II-2〉 연금 가입 목적별 연금시장 구분

연금시장 구분	연금 가입 목적	
	노후자산 적립	종신연금 수령
세제적격	✓	△
세제비적격	✓	✓
퇴직연금	✓	

III

경제환경과 소비자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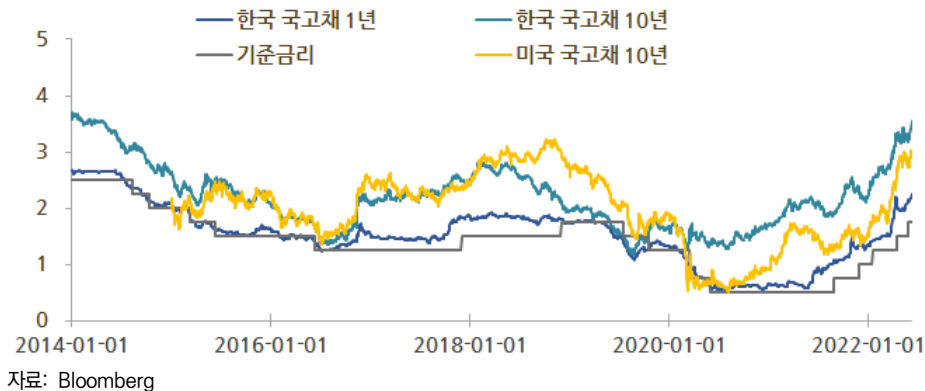
1. 경제환경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중금리 상승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국제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고,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연초 3,000포인트에서 7월 현재 2,300포인트까지 하락함

〈그림 III-1〉 한국, 미국 금리 추이

(단위: %)



○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

-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적연금시장에서도 다양한 금융환경에서 소비자의 노후 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신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투자형 상품의 개발도 요구됨

- 저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기에는 변액연금과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고 고금리 및 금융시장 침체기에는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임
- 한편,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고 향후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형 상품과 이율형 상품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¹⁾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 있음(김유미 2022)
- 종신연금 수령기에도 금융환경에 따라 투자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수 있으므로 정기인출 펀드, 변액 연금의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 등과 같이 종신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공급도 요구됨

〈표 III-1〉 금융시장 환경과 연금상품 니즈

금융환경	연금 가입 목적	
	노후자산 적립	종신연금 수령
저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	투자형 연금상품	정기인출 펀드, GLWB
금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하이브리드형 연금상품	-
고금리 및 금융시장 침체	이율형 연금상품	종신연금, 고연령 확정형 연금

2. 소비자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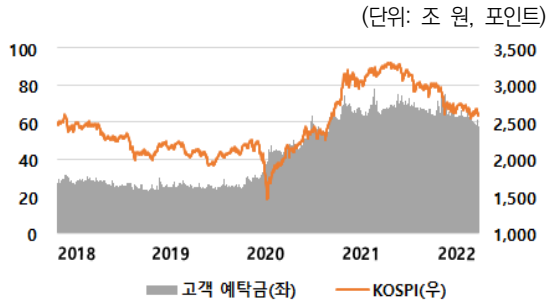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주식처럼 손쉽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Exchange Traded Fund)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확대됨

-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1,50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2021년 초 3,000 포인트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모두 크게 확대됨
- 특히 ETF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며 펀드에 비해 수수료와 운용보수가 낮고, 특정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특정 섹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크게 증가함

1) 예를 들어,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하지만 주가지수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지수연계형 연금(Fixed Index Annuity; FIA)과 하이브리드 변액연금(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 RILA)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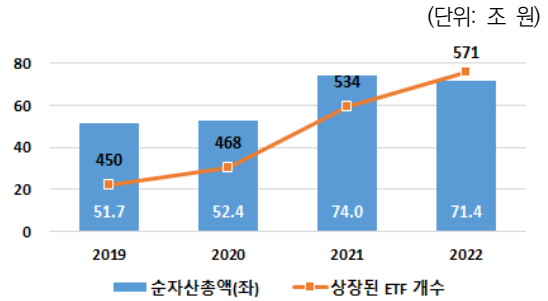
- 2019년 5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ETF 순자산총액은 2021년 약 74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에 상장된 ETF 수는 2019년 450개에서 2021년 534개로 20% 가까이 증가함

〈그림 III-2〉 주가지수(2018~2022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III-3〉 ETF 규모(2018~2022년)



주: 2019~2021년은 연말, 2022년은 6월 13일 기준임

자료: 한국거래소

○ 한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개인이 투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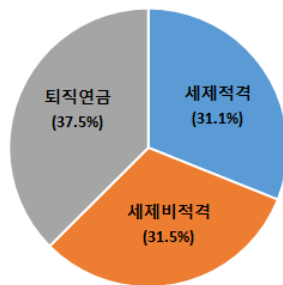
-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회사가 등장하고 기존 금융회사도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도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충성도는 낮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 규모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형성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형 상품 선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IV

보험산업의 사적연금 경쟁력 진단

- 2021년 말 현재 사적연금의 3개 세부 시장은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유사한 적립금 규모를 보이고 있어²⁾ 하나의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시장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세제적격 연금시장이 31.1%,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이 31.5%, 퇴직연금시장이 37.5%의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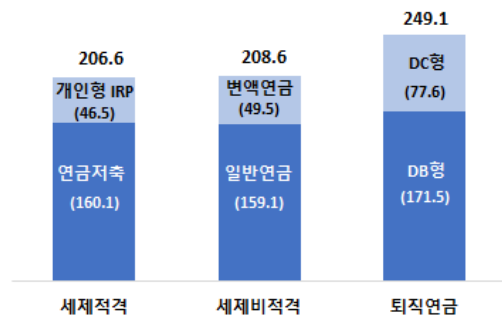
〈그림 IV-1〉 2021년 사적연금 적립금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4. 7),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그림 IV-2〉 2021년 사적연금 종목별 적립금 규모

(단위: 조 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4. 7),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12),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수익률 제고 명목의 투자형 상품 확대 노력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11),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표 IV-1〉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위축요인

사적연금 분류	위축 요인
세제적격 연금시장	• 세제혜택 약화(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개인형 IRP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 저금리하에서 수수료 제약(7년 내 원금 100% 보장) • IFRS17, K-ICS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 변액연금의 선취 수수료
퇴직연금시장	• DB형 퇴직연금 비중 축소 • 투자형 상품 유도

- 각 사적연금시장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보험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과 새로운 환경에서 부상한 요인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함

1. 세제적격 연금시장

-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은 적립단계에서 과세이연의 원리에 맞도록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으나 2013년 소득세율과 무관한 세액공제로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함(정원석·마지혜 2017)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에서는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 연금저축 1인당 납입금액이 300만 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최근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제적격 연금의 연간 총 세제혜택 한도 또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³⁾
 -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 장년층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 납입액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⁴⁾임
 - 그러나 2021년 기준 세제적격 연금저축 1인당 납입금액은 26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 확대 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7. 21), “2022년 세제개편안”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1. 13),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표 IV-2〉 세제적격 연금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소득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A)	IRP(B)	합계(A+B)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16.5%	400만 원 (600만 원 ¹⁾)	700만 원 (900만 원 ¹⁾)	700만 원 (900만 원 ¹⁾)
근로소득 1.2억 원 이하,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13.2%	3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위 소득 기준 초과				

주: 1)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11. 2), "[금융꿀팁 200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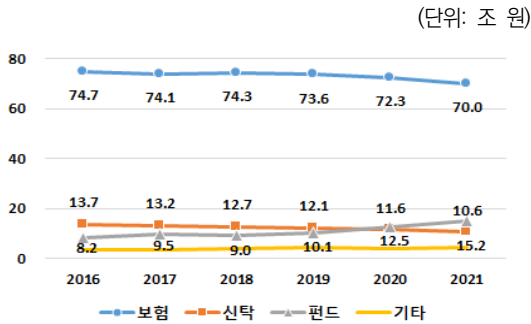
○ 세제적격 연금의 현행 세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다르게 적립기간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기간 분리과세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태열·정원석 2021)

- 세계적으로 세제적격 연금에 대한 세제는 적립금에 대한 비과세(Exempt)와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를 적용하되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Tax)하는 EET 방식을 기본으로 함
- 그러나 국내 세제적격 연금시장은 2013년 세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후자산 적립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됨
- 그 결과,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일부만 비과세되고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은 납입단계와 수령단계에서 모두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상호 대체관계를 이루는 가운데(김세중 2022), 개인형 IRP 성장이 연금저축 성장을 앞서는 상황이며, 증권업권의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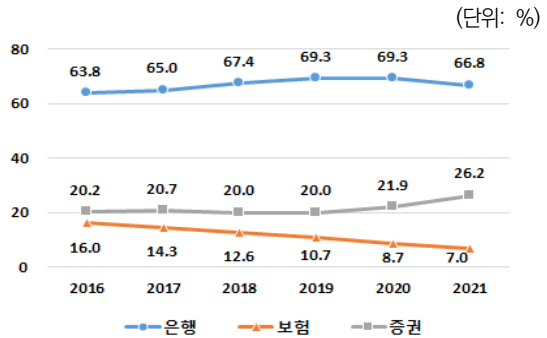
- 연금저축은 2021년 보험산업의 비중이 70%로 압도적이나, 은행은 연금저축 판매를 중시한 가운데 증권업권의 점유율이 2019년 10.1%에서 2021년 15.2%로 증가하면서 세제적격 연금에서도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함
- 한편, 은행이 주도하는 개인형 IRP는 2015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ETF 투자가 가능한 점이 부각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35%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업권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IV-3〉 세제적격 연금저축 업권별 점유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각 연도

〈그림 IV-4〉 개인형 IRP 업권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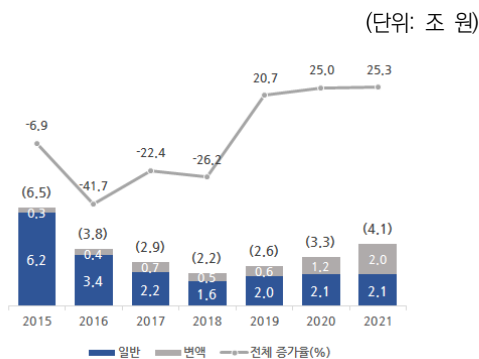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2.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 보험회사만이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연금의 2021년 초회보험료 규모는 2015년 수준을 하회하여, 보험산업 연금 부문의 전반적인 축소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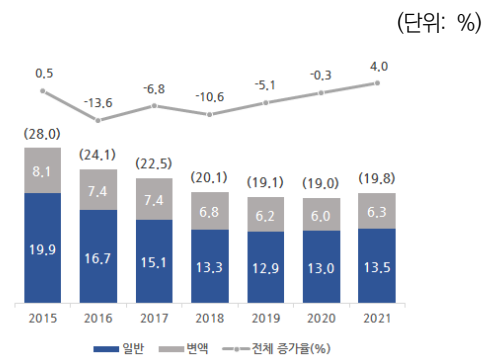
-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의 초회보험료는 2015~2018년 기간에 이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함
- 2019년 일반연금 판매가 증가하고 2020~2021년 주식시장 활황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감소 폭이 너무 커서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2015년 수준을 밑돌고 있음
- 변액연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하여 최근에도 수입보험료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2021년 세제비적격 연금의 성장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음

〈그림 IV-5〉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V-6〉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하고 있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제도 개편은 보험설계사의 연금 판매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에 일반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해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⁵⁾), 이는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연금 수령보다는 적립에 초점을 맞춘 감독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시이율 변화는 수수료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판매 수수료가 줄어든 일반연금보다 보장성보험 판매에 대한 선호가 확대됨
- 새 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시행되면 일반계정에서 관리하는 연금 적립금을 시가 평가함에 따라 자본 변동성이 커지고, 연금에 대한 요구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FRS17에서는 일반계정의 연금저축 및 일반연금의 적립금을 평가시점의 갱신된 가정으로 평가하므로 자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새 자본규제(K-ICS) 적용 시 금리위험 측정이 강화되고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노후자산 형성 수단에는 연금 이외에도 펀드,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므로 노후소득 적립 수요가 연금수요로 연결되려면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선취방식을 적용하는 변액연금은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수익률에서 불리함이 있음
 -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사업비를 선취하지 않고 납입 원금이 그대로 펀드에 투자되는 타 금융권 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조건의 초기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
 - 2014년 4월부터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은 사전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2017년 현재 판매 중인 변액연금의 대다수가 선취방식에 따라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어서 납입 보험료에서 신계약비와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납입 보험료의 85~95%)만 펀드에 투자됨(김세환 2018)

5)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변경, 기존에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올해 1월부터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 시점(납입기간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변경함

3. 퇴직연금시장

○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은행의 적립금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그 반사효과는 증권업권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21년 현재 보험회사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에서는 13.9%에 불과하여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 점유율은 2017년 24.8%에서 2021년 25.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 점유율은 6.8%에서 5.5%로 하락함
- 반면 증권업권(금융투자)의 점유율은 2017년 19.0%에서 2021년 20.5%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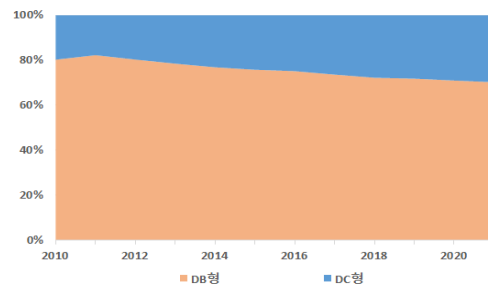
〈표 IV-3〉 업종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2017	48.3	24.8	6.8	19.0
2018	48.6	24.2	6.6	19.3
2019	48.3	24.4	6.2	19.8
2020	48.0	24.7	5.8	20.0
2021	47.4	25.1	5.5	20.5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그림 IV-7〉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DB형, DC형)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 퇴직연금 자산의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2022년 도입) 등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보험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사전지정운용제도(2022년 도입)는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 사전지정운용의 투자 방식에는 원리금보장, 펀드, 포트폴리오가 있음
- 기존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예 따라 위험자산한도(70%)가 존재하나, 사전지정운용은 적립금의 100%까지 위험자산 운용이 가능함

V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 역할 제고 방안

1. 세제적격 연금시장

-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연금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세액공제 혜택은 과거 소득공제 혜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혜택 규모가 감소하였고 세제혜택 변경 후 연금저축 가입률은 하락세를 보임(정원석·마지혜 2017)
 - 또한 세액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ET 원칙과 달리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제혜택 부여 방식을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보다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공제로 환원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연금 수령 기간을 지금보다 다양화하고, 가입자가 최소 세제적격 연금 수령 기간인 10년보다 긴 기간을 선택할수록 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립 기간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환급해야 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행 연금 수령 기간 10년보다 긴 수령 기간을 선택한 가입자는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예시: 10년, 20년, 종신 중에서 수령 기간을 선택하고 각 수령 기간에 대응하여 세제혜택을 차등화)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저축·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시키고, 개인형 IRP의 투자 옵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금 감독을 연금 수령에 초점을 두느냐 적립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한데, 장수하는 고령 사회에서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수단으로서의 연금은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연금을 보장성과 저축성 사이의 제3의 상품으로 분류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변액연금의 경우 선취 수수료 부담이 적은 후취 수수료 상품을 활성화하여 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유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상품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됨
 - 보험회사는 연금과 함께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상품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부채는 사망률 변화에 따른 충격이 반대로 나타나는 자연헷지(Natural hedge)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은 자본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유효함
 -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연금 비중 확대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적립 기간,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에 부합하면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금상품의 가입목적은 장기적으로 노후자산을 적립하기 위한 수요, 은퇴에 임박하여 단기적인 적립을 원하는 수요, 은퇴 후 공적연금 개시 전까지 단기적인 연금 수령(브릿지 연금)을 원하는 수요, 종신까지 연금 수령을 원하는 수요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 장기적으로 노후자산을 적립하기 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선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저축형 상품, 투자형 상품, 혼합형 상품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미국 연금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주가지수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지수연계형 연금 및 하이브리드 변액연금 판매가 크게 증가함(김유미 2022)
 - 은퇴에 임박하여 단기적으로 적립을 원하는 수요와 은퇴 후 공적연금 개시 전까지 단기적인 연금 수령(브릿지 연금)을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3~5년 단기간 확정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단기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종신까지 연금 수령을 원하는 수요에 대응해서 전통적인 공시이율형 종신연금 외에 변액연금의 GLWB 옵션을 이용하여 변액연금 펀드를 유지하면서 노후소득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통해 노후소득의 유연성과 수익성을 원하는 수요에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고연령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일명, 한국형 토탈연금)⁶⁾과 같은 상품 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V-1〉 연금 가입 목적과 상품형태 조합 예시

구분		연금 가입 목적			
		적립기	은퇴 직전 단기적립	단기 연금 수령	종신 연금 수령
상품 형태	변동금리형	✓			✓
	단기확정금리형		✓	✓	
	지수연계형	✓			
	하이브리드형 변액	✓			
	전통형 변액	✓			✓

- 한편, 보험회사가 투자형 또는 혼합형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 변동성을 줄이고, 금리리스크와 장수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은 대표적인 노후보장상품이나 소비자에게 펀드,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상품이 존재하며, 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연금수요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됨
 - 자산연계형 연금보험과 같이 공시이율을 보장하면서도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한 상품 등 저금리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설계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상품 대비 연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해야 할 것임

⁶⁾ 종신연금 수령 개시가 은퇴시점이 아닌 80세 이후의 고연령에서 시작되는 거치식 종신보험으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고연령의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됨

3. 퇴직연금시장

-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연금 수령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연금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연금 수령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연금이 은퇴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대비 페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연금 수령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 수령이 활성화되면 종신연금이나 장기간 연금 수령 수요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으로 흡수되면서 사적연금의 보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종신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VI

결론

- 본 보고서는 연금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환원,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수수료 구조의 다양화 허용, 퇴직연금시장에서 20년 이상의 연금 수령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함
 -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함으로써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의무연금 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하며,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전략적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연금 가입 목적별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및 공급,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수익률 개선 노력 및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시장에서 수익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함
 -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하고,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형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변액보험의 경우 선취 수수료 부담이 적은 후취 수수료 상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유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되며,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종신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표 VI-1〉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
	(연금보험 분류방식 변경)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유도)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략적 대응방안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저축형과 투자형 상품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 가입 목적별 연금상품 공급)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 확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 극대화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 개선
	(퇴직연금과 종신연금 연계)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부 사적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의 니즈는 노후자산을 적립하는 데 있거나 적립된 자산을 연금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적립의 경우 저축인지 투자인지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 특히 노후자산 적립 시장은 업권 간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환경 및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수요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강점을 가진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사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 측면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면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세중(2020),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 김세중·김유미(2022),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 김세환(2018),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김유미(2022),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연금상품 동향」, 『KIRI 리포트』 글로벌이슈, 보험연구원
- 이태열·정원석(2021),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 정원석·마지혜(2017),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저자약력

김세중 한양대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총괄)
E-mail : sjkim@kiri.or.kr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22-04호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발행일 2022년 08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